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보도자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 보도일시: 2014.12.2(화) 조간,
<인터넷 12.1(월) 12:00 이후>
- ▶ 총 4 쪽 (붙임 별도)

- ❖ 근로개선정책과 과장 박광일 사무관 송유나
 -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과장 김윤태 사무관 박삼동
 - ❖ 인력수급정책과 과장 김도형 사무관 박두수
- ☎ 044-202-7529, 010-7176-0637
044-202-7459, 010-9370-8935
044-202-7408, 010-5297-973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경비직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 고용노동부는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경비직 등 고령자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 최근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경비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결과 (‘14.11.27.~28, 864개소 샘플조사),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은 약 4%* 정도로 파악되었다.
-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장(104개소)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인원감축 고려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92개소, 88.4%).

* 샘플조사대상 경비직 근로자의 4%(864개 사업장, 8,829명 근로자중 354명)에 대하여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붙임1 참조)

** 경비직 근로자 규모 약 25만명 내외(‘13.10월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맞춤형 고용 지원방안

< 재정지원 확대 >

□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

* 현재 지원기간을 '17.12.31까지 3년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경비직 고령근로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 (현행)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의 기준고용률 23%
→ (개선) 12%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 확대

○ 이 경우 최대 1만명 정도가 새롭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약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또한,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예시)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노무관리 컨설팅 등 인식개선

○ 우선 '15년에는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약 50억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 운영(12월) >

□ 금년 12월을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 12월 중에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 근로자 인원, 경비업무 운영형태(경비업체, 직접고용), 경비업체 변경 및 해고예고 등 실시현황·계획

- 아울러 해고자 발생 또는 민원 제기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15년 1분기 중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예정이다.

< 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협력 강화 >

- 12월 중 전국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 아산시 는 지역노사민정 협력 차원에서 아파트 유 무인 경비 효율성 분석 조사연구를 거쳐 15년부터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인건비 및 시설지원 예정

- 또한, 반상회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고령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제도 변경 내용 및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고령 근로자 고용시 정부지원제도 ▲주민 안전·생활 편의 등 경비 근로자의 장점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 주민 유의사항 등

- 아울러, 아파트 입주자 대표, 위탁관리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입주민대표 기초 자치단체장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장관명의 서한 및 협조공문 등 발송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당 부담이 일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됨에 따라 국가 개인 모두에게 고령자 일자리가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 “경비직 일자리는 특히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이므로, 이를 서로 지켜주고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며,
- “정부도 금번 겨울이 고령자가 대부분인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앞으로 고령 근로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송유나사무관(☎ 044-202-7529),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박삼동 사무관(☎ 202-7459), 인력수급정책과 박두수 사무관(☎ 202-7408)에게 연락주시십시오.</p>
--	--

◇ '15.1월 경비직 근로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앞두고 고용조정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조정 의사 및 규모,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여부 등에 대하여 유선조사 실시('14.11.27~28)

1] 조사대상

- 지역별, 아파트 단지 규모별, 관리 형태별로 총 864개소를 표본 사업장으로 선정·조사

구분	계	300세대 미만	300~500세대	500~1000세대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이상
계	864	175 (20.3)	209 (24.2)	283 (32.8)	183 (21.2)	14 (1.6)
위탁관리 (751개소)	751	129 (17.1)	183 (24.4)	257 (34.2)	169 (22.5)	13 (1.7)
자치관리 (113개소)	113	46 (40.7)	26 (23.0)	26 (23.0)	14 (12.3)	1 (1.0)

2] 조사결과

- **(최저임금 전면 적용시 임금인상)** 864개소 중 779개 사업장(90.2%)에서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따라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답변

구분	계	① 임금인상 필요	② 임금인상 불필요
계	864	779	85
(%)	(100)	(90.2)	(9.8)
위탁관리	751	682	69
자치관리	113	97	16

- **(인력조정 규모)** 조사대상 사업장(864개소, 8,829명)의 고용조정 고려 인원은 354명(4.0%)* 수준

구분	계	위탁관리	자치관리
경비원 등 감시직 근로자 수(전체)	8,829	7,876	953
감축시 규모 (%)	354 (4.0)	336 (3.8)	18 (0.2)

- **(경비인력 조정 사업장) 1명 이상의 고용인원 감축을 고려하는 사업장은 104개소(12.1%)**

구분	계	① 그 령 다	② 아 니 다	③ 무 응 답
계	864	104	758	2
(%)	(100)	(12.1)	(87.7)	(0.3)
위 탁 관 리	751	93	656	2
자 치 관 리	113	11	102	-

* 경비인력 감축을 고려하는 업체(104개소)의 인력감축 사유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92개소(88.4%) ▲무인시스템 도입 3개소(2.9%) 등

- **(위탁관리 업체 변경) 경비업 위탁관리 위·수탁기간 만료 시 관리업체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사업장은 453개소(60.2%)**

구분	계	① 변경 할 계획 있다	② 확정되지 않았지만 변경할 수 있다	③ 변경하지 않는다	④ 확정되지 않았지만 변경할 것이다	⑤ 무응답
위탁관리	751	30	263	227	226	5
(%)	(100)	(4.0)	(35.0)	(30.2)	(30.0)	(1.0)

* 위·수탁기간 만료로 위탁업체를 변경할 계획이 있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 293개소의 업체 변경사유는 ▲관행상 계약 만료시 업체 변경 117개소(40.0%) ▲최저임금 인상 18개소(6.1%) 등

- **(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위탁업체 변경시 165개소(56.3%)가 고용승계 계획 언급,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사업장은 8개소(2.7%)**

◇ '15년도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따른 고용불안 예방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재정지원 및 행정지도 노력을 강화하고,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로의 발전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 및 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

1 재정지원 확대

1.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확대

□ 사업 내용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 이상 고용 시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원
- '14년 만료 예정이었으나, 현재 3년간 지원기간을 연장('15년~'17.12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2) 개정 추진 중
- * 입법예고(11.28) → 차관회의(12.18) → 시행('15.1.1)

□ 개편 내용(지원요건 완화)

- 현행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 * (현행) 사업시설유지관리 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의 기준고용률 23%
→ (개선) 12%로 하향 조정

□ 기대효과

- '15년 신규 수혜인원 1만여명을 포함하여 총 1만4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총예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예산	지원금액	지원인원
2013	44,975	4,500	936	1,300
2014.10월	57,705	1,500	1,325	1,840
2015	42,958	10,000	-	14,000

2.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활용

- (사업 개요) 아파트 단지 등에 고용된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위한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입주민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 노무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일자리 개선사업 지원**

* 아산시는 지역노사민정 협력차원에서 아파트 유·무인경비 효율성 분석 조사 연구를 거쳐 15년부터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인건비 및 시설 등 사업실시 예정

- (추진 배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력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안정적 일자리 유지 및 창출

- (지원 대상) 저소득층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및 소속 경비 고령근로자를 중심 지원

- (지원 내용)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지역 주민 인식개선 및 노무 관리 컨설팅 등 경비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및 고용개선사업 지원

<예시>

- 작업환경 개선 : 아파트 경비초소 및 수위실 시설 등 개선 지원
- 고용유지·창출 : 인건비 일부 지원 (타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노무관리 컨설팅 : 근로시간 휴게, 임금, 훈련,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 지역사회 인식개선 : 교육, 홍보, 설명회, 우수사례 공유, 조사연구 비용 등 지원

* 지역 실정에 따라 상기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토록 유도

- (지원 절차) 기초자치단체(또는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 제출 →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 (간사 고용센터)에서 심사·선정

* 지역 노사, 시민단체, 학계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거나 지자체 대응투자 시 우대

- (지원규모) 15년에는 약 50억 원 내외로 예산지원,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자체별로 배분

- (향후 계획)

- 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침 시달 (14.12월)
- 자치단체, 경비직 고령근로자 일자리 개선사업 신청 (~15.1월)
- 경비직 고령근로자 일자리 개선사업 선정 및 실시 (15.2월~)

1.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 운영(12월)

- 12월을 경비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관서에 기관장이 참여하는 경비근로자 고용안정 T/F 를 구성, 고용안정 지도 강화

< 경비 근로자 고용안정 T/F 활동 계획 >

1. 사업장 사전점검 및 지도(12월중)

- (사전점검) 공동주택(국토부 공동주택관리시스템 13천여개) 중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수, 경비업체 변경 및 해고예고 등을 우선으로 확인
- (관리대상 풀 구성) 다수 인원 해고예고 및 근로조건 관련 분쟁예상 사업장
- (현장지도)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 감원 최소화 및 불이익 처우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지 출장하여 행정 지도*
* 최저임금 이상의 정당한 대가 지급, 고용유지,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등
- (간담회 및 설명회) 시·군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위탁관리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청(지청)장 주관으로 실시

2. 본 점검 및 실태조사(15년 1/4분기)

- 관리대상 사업장 중 해고자 발생, 위탁관리업체 변경, 민원 제기 사업장 등 500개소 내외 대상 노동관계법 등 위반여부 점검

3. 특별근로감독 실시

- 대규모 감원을 한 사업장에 대해 변경 전·후 관리업체 모두 실시, 다수 아파트를 운영하는 업체는 기타 관리사업장까지 확대

2. 장관 서한 및 공문 등 발송

- 장관 서한 : 입주민대표자 대상 협조서한 발송
- 공문 발송 : 시군구청장, 입주민 대표, 용역업체 등 대상 협조